

奎章閣 所藏 內賜本 研究

- 個人 內賜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aesabon Preserved in Kyujanggak

- Focusing on the individual Naesabons -

이 재 준(Jae-Jun Lee)*

송 일 기(Il-Gie Song)**

< 목 차 >

I. 緒論	IV. 板種 分析
II. 內賜本 現況	V. 主題 分析
III. 時期 分析	VI. 結 論

초 록

내사본이란 국가에서 간행한 서적을 왕명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 하사한 서적이다. 기관은 사고, 관청, 서원, 향교 등을 이르고, 개인은 왕실 중친 및 대소신료 등을 이른다. 서적이 간행되면 기본적으로 史庫를 비롯한 주요 관서에 배포되었고, 대소신료를 포함하여 간행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게도 하사되었다. 또한 국가의 공식 행사(가례, 책봉, 회갑, 과거, 공역 등)가 마무리 된 후 포상으로 하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 내사본을 시기별, 관종별, 주제별로 분석하여 소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內賜本, 內賜記, 奎章閣

ABSTRACT

The Naesabones(內賜本) are the books awarded to the organizations and the individuals by the Kings of Joseon(朝鮮) Dynasty. The organizations include the history archives[史庫], the government offices[官廳], the private academies[書院] and the county public schools[鄉校]. The individuals include the royal family members and the members of the cabinet. In Joseon Dynasty, the books were distributed to the government offices, the members of the cabinet, and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printing that book. Also after the official ceremonies, the books were given as the rew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ibliographical features of the naesabones - especially awarded to the individuals - now in Kyujanggak.

Keywords: Naesabon, Naesaki, Kyujanggak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ljj7523@aks.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28일

I. 緒論

조선시대에는 왕명으로 서적을 하사하는 제도가 있었다.¹⁾ 이를 內賜 制度라 하고 그 서적을 內賜本이라 한다. 서적의 하사 대상은 기관과 개인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관은 사고, 중앙 및 지방 관청, 서원, 향교이고 개인은 왕실 종친, 중앙 및 지방 관리, 儒生들이다. 국정 운영에 긴히 필요한 서적은 소량을 간행하여 사고와 중앙관청에 제한적으로 배포하였고, 민간에 廣布할 목적인 경우에는 수백 부를 간행하여 중앙은 물론 지방의 府, 牧, 郡, 縣에 이르기까지 널리 배포하였다. 이처럼 서적의 성격에 따라 하사되는 규모와 범위는 매우 다양했다.

내사본은 하사된 사실이나 문헌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각 서적마다 내사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內賜記와 內賜印이다. 내사기는 서적의 하사 내역을 기록한 것이고, 내사인은 내사기의 공신력을 증명하는 왕의 도장 즉, 御寶이다. 이 두 가지 외형적 특징을 가진 서적을 내사본으로 일컫고 있다. 내사기가 쓰여 지고 어보가 安印되기 때문에 동일본이라도 非 내사본보다 공신력과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다.²⁾

그러나 단순히 기록과 어보의 존재로만 가치가 높다면 관람하기 좋은 비싼 유물에 불과할 뿐이다. 내사본의 공신력과 가치를 논하는 이유는 내사기에 쓰여 진 정보가 학술 연구에 매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고판본에는 간행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의 편년체 역사 문헌에도 정확한 간행 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예가 많다. 이런 경우 내사기의 연호와 월, 일 등의 기록은 해당 서적의 간행시기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³⁾ 내사기에 기록된 內賜者와 受賜者의 정보는 기존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여 인물의 전기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꾸밀 수 있다. 또한 서적의 유통 규모 및 반포

- 1) 국왕으로부터 서적의 하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1045년(정종11) 4월에 經籍을 관장하는 秘書省이 『禮記正義』 70부와 『毛詩正義』 40부를 新刊하여 한 부를 御書閣에 보관하고 나머지를 文臣에게 頒賜하였고(고려사 권6. 정종 11년 4월 乙酉), 1096년(숙종1) 7월에는 왕이 文德殿의 藏書를 열람하고, 그 중 완질을 골라 文德殿,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兩府의 宰臣, 誥院, 史翰, 內侍, 文臣 등에게 頒賜하였다(고려사 권11. 숙종 원년 7월 庚寅). 1190년(명종20) 4월에는 『增續資治通鑑』을 讎校하여 州縣에 分送한 후 그곳에서 찍어 진상케 하여 侍從儒臣에게 頒賜하였다(고려사 권20. 명종 20년 4월 壬子).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1) 李崇仁(1347-1392)이 죽자 태조가 權近(1352-1409)에게 遺稿의 서문을 짓도록 명한 후 印頒시켰고(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壬申), 1403년(태종3)에는 『朱文公家禮』 150부를 간행(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8월 甲戌)하여 중앙의 여러 관청에 배포하는 등 서적의 내사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 2) 내사본과 일반본은 내사기와 내사인의 유무 외에 紙質과 裝幀도 달라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미 차별화되었다. 또한 같은 내사본이라도 기관의 내사본과 개인의 내사본은 두께와 무게 등 품질 차이가 크다. 기관본은 搗砧 가공하여 날장이 두껍고 섬유질이 강화된 草注紙를 사용한 반면, 개인본은 보통의 楮注紙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이는 보존이 목적인 기관본과 이용이 목적인 개인본의 활용 행태에 따른 차이로 짐작된다.
- 3) 조선시대에는 서적의 간행 직후에 내사기를 적어 하사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내사기를 통해 서적의 간행 시기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사기와 간행 시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경우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등 내사기는 당대의 서적 반포 사실을 증명하는 고문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 내사본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기관은 규장각과 장서각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각 대학도서관에도 상당수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발간된 과거의 책자 목록이나 온라인 목록에는 내사기의 전체를 기록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탈자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내사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⁴⁾

앞서 필자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내사본만을 대상으로 그 서지적 특징과 기록 형식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오류의 일부를 지적하고 특징을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 내사본을 대상으로 현황과 특징, 구성 비율 등을 분석하고, 개별 컬렉션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사기 및 내사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內賜本 現況

규장각의 역사와 현황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지만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사본의 전래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1463년(세조9) 梁誠之(1415-1482)의 건의로 처음 규장각의 창건이 논의된 후⁵⁾ 큰 진전이 없다가 1694년(숙종20)에 비로소 규장각 건물이 건립되고 숙종의 친필로 쓴 ‘奎章閣’ 현판이 걸리게 되었다.⁶⁾ 그러나 규장각이 제도적으로 설치·운영된 시기는 정조의 즉위 직후인 1776년이었다. 규장각은 御製, 御筆, 御眞, 寶印 등 왕실자료의 奉安을 위한 國立圖書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예 관리를 육성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기구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조 사후에는 정치적 권한이 크게 축소된 채 왕실문헌의 보관 기능만 유지되었다. 1863년(고종즉위)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자

4) 내사본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승운, “奎章全韻을 통해서 본 朝鮮朝의 書籍 頒賜와 그 規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293-316.
- ② 沈賜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 서울: 一志社, 1990.
- ③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제8집(2002. 12), pp.5-30.
- ④ 尹炳泰, “內賜記 이야기,” 古書, 제4호(1997. 4), pp.7-20.
- ⑤ _____, “內賜記와 內賜印記,” 문헌정보학연구지, 제8호(1983. 2), pp.25-43.
- ⑥ 李殷澤, “菱花板製作 및 內賜記研究,” 도서관학논집, 제2권(1975. 12), pp.79-97.
- ⑦ 李在俊, 藏書閣 所藏 內賜本 研究,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
- ⑧ 이재준·송일기, “藏書閣 所藏 內賜本の 書誌의 研究,” 書誌學報, 제33호(2009. 6), pp.153-184.
- ⑨ _____, “朝鮮時代 內賜本の 內賜記 記述 形式考,”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pp.85-118.
- ⑩ 최경훈,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所藏 內賜本,” 古印刷文化, 제18집(2011. 11), pp.85-122.

5) 『세조실록』 9년 5月 戊午. 臣又竊觀君上御筆與雲漢同其昭回 … 乞今臣等勸進御製詩文奉安于麟趾堂東別室名曰奎章閣 …

6)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문의 현판 ‘奎章閣’은 숙종의 친필을 가공한 것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중부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규장각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⁷⁾ 그 후로도 1894년(고종31) 갑오개혁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그에 따른 지위의 浮沈을 거듭하며 존속되었다. 1909년(융희3)에는 약 10만 여권의 서적을 제실도서라 명하고 목록의 작성을 시작하였으나 나라의 멸망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1910년 8월 조선이 망하면서 규장각은 폐지되었다. 1911년 11월 조선총독부 取調局에서 모든 도서를 점유하였는데 그 중 어제, 어필, 선원보첩은 봉모당과 보각을 지어 따로 보관하였다. 1912년, 나머지 제실도서를 총독부의 참서관분실에서 관리하면서 장서의 명칭도 규장각도서로 바뀌게 된다.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총독부 소관 도서 모두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고, 해방 후 국립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부속 도서관으로 편입되었다.

현 규장각도서는 위의 과정을 거쳐 전래된 규장각 본도서 14만여 점, 1945년 광복 전후 서울대학교에서 수집한 2만여 점, 기증문고 6,000여 점⁸⁾과 고문서, 책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고본 중심의 본도서 외에 수집 및 기증본을 수합함으로써 자료의 성격이 다양하게 구현되었고, 개인 내사본의 구성이 보다 풍부해졌다. 본도서, 구입본, 기증본에서 추출한 개인 내사본은 모두 100건이다. 이를 출처별로 나누면 본도서 21건, 구입본 52건, 一叢文庫 10건, 가람文庫 9건, 想白文庫 7건, 經濟文庫 1건으로 나타난다.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전체 內賜本 현황

書名	內賜記	內賜印
春秋左傳直解	嘉靖十三年三月日內賜吏曹判書李思鈞春秋左傳直解一件命除謝恩左承旨臣許(手)	宣賜之記
大典後續錄	嘉靖二十二年十一月日內賜僉知中樞府事金緣後續錄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李(手)	宣賜之記
農事直說	萬曆九年十二月日內賜春川府使朴承任農事直說一件命除謝恩右副承旨臣盧(手)	宣賜之記
山谷詩集註	天啓三年五月日內賜全昌尉柳廷亮黃山谷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權(手)	宣賜之記
續武定寶鑑	天啓三年六月日內賜知中樞府事李時發武定寶鑑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權(手)	宣賜之記
四聲通解	順治十三年七月十八日內賜藝文館奉教李奎濂四聲通解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金(手)	宣賜之記
龍飛御天歌	順治十六年十二月十一日內賜司憲府執義李惟泰龍飛御天歌一件命除謝恩行右承旨臣金(手)	宣賜之記
孝經大義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內賜議政府領議政鄭太和孝經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孝經諺解	康熙五年十月二十三日內賜議政府左參贊宋浚吉孝經諺解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攷事撮要	康熙十四年正月二十九日內賜副司果尹摺攷事撮要一件命除謝恩右副承旨臣鄭(手)	宣賜之記

7) 홍선대원군은 당시 국·내외의 정세 불안 등, 여러 혼란을 국가 기강의 문란과 약해진 왕권 때문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이유를 외척 세력의 득세로 보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게 된다. 그 일환으로 규장각의 어제 및 어진의 봉안 기능을 중진부로 이관시켰는데 이는 규장각의 권한 및 기능이 더욱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8) 一叢文庫(방중현), 가람文庫(이병기), 想白文庫(이상백), 經濟文庫(구 경제연구소).

貞觀政要	康熙十五年八月二十三日內賜領敦寧府事金萬基貞觀政要一件命除謝恩左副承旨臣丁(手)	宣賜之記
醫林撮要	康熙十五年十一月十九日內賜行副護軍□□□醫林撮要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丁(手)	宣賜之記
排字禮部韻略	康熙十七年六月二十二日內賜司諫院大司諫柳命天禮部韻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權(手)	宣賜之記
列聖御製補遺	康熙十九年…內賜禮曹參判□□□列聖御製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閔(手)	宣賜之記
中庸諺解	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內賜領敦寧府事金萬基中庸諺解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周易本義啓蒙翼傳	康熙二十六年六月三十日內賜東平君抗啓蒙翼傳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申(手)	宣賜之記
孟子諺解	…三十二年九月日…番內官李重蔓御筆孟子諺解一件命除謝恩承傳色臣金(手)	宣賜之記
沙溪先生遺稿	康熙三十四年九月二十六日內賜承政院左副承旨李壘沙溪集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黃(手)	宣賜之記
春秋補編	康熙四十季五月二十日內賜延祜君吟春秋補編一件命除謝恩左副承旨臣洪(手)	宣賜之記
近思錄	康熙四十七年五月二十六日內賜行吏曹判書李寅輝近思錄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姜(手)	宣賜之記
近思錄釋疑	康熙四十七年五月二十六日內賜行吏曹判書李寅輝近思錄釋疑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姜(手)	宣賜之記
肅廟寶鑑	雍正八年五月初九日內賜肅廟寶鑑一件成均館祭酒鄭齊斗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小學諸家集註	內與小學壹件予卽昨十二年丙辰正月二十一日世子周年也 / 癸酉九月廿二日太朝錫我初誕辰冊傳于元孫初誕辰也永垂于後	宣賜之記
女四書諺解	乾隆二年三月十九日內賜行弘文館副提學閔應洙女四書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女四書	乾隆…內賜知敦寧府事李箕翊女四書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內訓	乾隆二年六月二十四日內賜兵曹判書閔應洙御製內訓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大訓	乾隆六年十月二十九日內賜前校理李成中御製大訓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俞(手)	諭書之寶
聖學十圖	乾隆九年三月二十四日內賜綾昌君樞聖學十圖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李(手)	宣賜之記
古鏡重磨方	乾隆九年四月十八日內賜行禮曹判書閔應洙古鏡重磨方一件命題謝恩右承旨臣趙(手)	宣賜之記
續大典	乾隆十一年四月十二日內賜判敦寧府事閔應洙續大典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尹(手)	宣賜之記
大訓	乾隆二十年四月日內賜知事李成中御製添刊大訓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諭書之寶
御製御筆	乾隆二十年十一月二十六日內賜纂修郎聽弘文館副修撰洪準海御製御筆作貼一件命除謝恩右副承旨臣俞(手)	宣賜之記
敦寧府揭板	乾隆二十四年六月十八日內賜承政院同副承旨洪準海御製御筆敦寧府揭板印本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具(手)	宣賜之記
宗簿侍揭板	乾隆二十四年十二月初四日內賜宗簿寺提調綾昌君樞御製御筆宗簿寺揭板印本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揄揚盛烈錄	乾隆二十八年正月初一日內賜行副護軍權濬揄揚盛烈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金(手)	宣賜之記
抑箴	乾隆二十八年九月十七日內賜領府事申晚御製抑箴諸臣廢進冊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具(手)	宣賜之記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自醒錄	乾隆二十八年十二月二十四日內賜右承旨權濬御製自醒錄一件命除謝恩左承旨臣金(手)	宣賜之記
繼述受宴錄	乾隆三十一年九月十三日內賜刑曹判書沈鏞繼述受宴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讀書錄	乾隆三十二年十一月十六日內賜左參贊申晦御製讀書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金(手)	宣賜之記
大訓	乾隆三十四年正月二十二日內賜司諫洪秀輔御製大訓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金(手)	諭書之寶
永世追慕錄	乾隆三十五年八月二十六日內賜戶曹判書金時默御製追慕錄一件命除謝恩行都承旨臣具(手)	宣賜之記
勤政訓諭	乾隆三十六年正月二十五日內賜忠清監司權濬御製勤政訓諭一件命除謝恩同副承旨臣林(手)	宣賜之記
續光國志慶錄	乾隆三十六年十月二十日內賜行副司直權濬續光國志慶錄正件命除謝恩右承旨臣任(手)	宣賜之記
樹德全編	乾隆三十六年十二月初十日內賜行司直權濬御製樹德全編正件命除謝恩右承旨臣徐(手)	宣賜之記
耆科廢載錄	乾隆三十七年二月二十二日內賜承政院左承旨沈頤之御製舊邸耆科廢載錄一件命除謝恩同副承旨臣林(手)	宣賜之記
耆科廢載錄	乾隆三十七年二月二十二日內賜大司憲權濬御製耆科廢載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沈(手)	宣賜之記
永垂百世錄	乾隆三十七年三月二十八日內賜前參判權濬御製永垂百世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朴(手)	宣賜之記
追慕垂戒錄	乾隆三十七年七月十九日內賜行副司直權濬御製追慕垂戒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安(手)	宣賜之記
英祖御筆	乾隆四十一年七月三十日內賜奉朝賀李最中先朝御筆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金(手)	宣賜之記
明義錄	乾隆四十二年五月初六日內賜戶曹參議金亮行明義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	宣賜之記
明義錄	乾隆四十三年五月十二日內賜京畿水使洪秀輔明義錄一件命除謝恩奎章閣待教臣徐(手)	同文之寶
續明義錄	乾隆四十三年五月十二日內賜京畿水使洪秀輔續明義錄一件命除謝恩奎章閣待教臣徐(手)	同文之寶
속명의록언해	乾隆四十三年五月十二日內賜行副司直李養鼎續明義錄諺解一件命除謝恩右副承旨臣李(手)	宣賜之記
文臣講製節目	乾隆四十六年三月日內賜權知承文院副正字洪仁浩文臣講製節目一件命除謝恩奎章閣待教臣鄭(手)	同文之寶
國朝寶鑑	乾隆四十七年十一月日內賜國朝寶鑑考校郎聽洪仁浩國朝寶鑑一件命除謝恩奎章閣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入庭宗親…綸音	乾隆四十七年十一月日內賜副司直洪秀輔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一件命除謝恩奎章閣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原春道…綸音	乾隆四十八年十月日內賜前郡守李彬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一件命除謝恩檢校直閣臣徐(手)	奎章之寶
諭中外大小臣庶綸音	乾隆四十八年正月日內賜戶曹佐郎元毅諭中外大小臣庶綸音一件命除謝恩檢校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中外大小臣庶綸音	乾隆四十八年正月日內賜奉常正洪仁浩諭中外大小臣庶綸音一件命除謝恩檢校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中外大小臣庶綸音	乾隆四十八年正月日內賜議政府右議政金煜諭中外大小臣庶綸音一件命除謝恩奎章閣檢校直閣臣金(手)	奎章之寶

字恤典則	乾隆四十八年十一月十二日內賜前水使李彥熙字恤典則一件命除謝恩直提學臣徐(手)	奎章之寶
字恤典則	乾隆四十八年十一月十二日內賜舊抄啓文臣洪仁浩字恤典則一件命除謝恩待教臣李(手)	奎章之寶
弘文館志	乾隆四十九年六月十二日內賜知經筵權濬弘文館志一件命除謝恩直提學臣吳(手)	奎章之寶
諭大小臣僚綸音	乾隆四十九年七月初九日內賜行副司直權濬貽燕綸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尹(手)	奎章之寶
表忠綸音	乾隆五十三年四月日內賜承政院右副承旨洪仁浩表忠綸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尹(手)	奎章之寶
賡載軸(9卷)	乾隆六十年九月日內賜奎章閣提學□□□內苑賞花賡載軸一件命除謝恩直提學臣李(手)	奎章之寶
賡載軸(4卷)	乾隆六十年九月日內賜奉常寺正柳師模效宮周甲志喜賡載軸一件命除謝恩直提學臣李(手)	奎章之寶
賡載軸(2卷)	乾隆六十年十月日內賜奉祖賀洪秀輔賡載軸一件命徐謝恩直提學臣李(手)	奎章之寶
太學恩杯詩集	嘉慶四年三月日內賜上舍生沈來永太學恩杯詩集一件命除謝恩直提學臣李(手)	奎章之寶
列聖御製	嘉慶十九年六月日內賜檢校直閣李光文列聖御製一件命除謝恩直提學臣李(手)	奎章之寶
元陵誌狀續編	道光十七年八月日內賜檢校待教金學性列聖誌狀一件命除謝恩待教臣金(手)	奎章之寶
元陵誌狀續編	丁酉八月日內賜原任直閣□□□列聖誌狀一件命除謝恩待教臣金(手)	奎章之寶
諭中外…斥邪綸音	道光十九年十一月日內賜大護軍李翊會斥邪綸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南(手)	奎章之寶
諭中外…斥邪綸音	道光十九年十一月日內賜前司成姜必魯斥邪綸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南(手)	奎章之寶
諭中外…斥邪綸音	道光十九年十一月日內賜部將張寅植斥邪綸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南秉哲(手)	奎章之寶
諭中外…斥邪綸音	道光十九年十一月日內賜永川郡守李□□斥邪綸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南(手)	奎章之寶
兩陵誌狀續編	庚戌六月日原任直閣□□□內賜列聖誌狀一件命除謝恩檢校待教臣李(手)	奎章之寶
兩陵誌狀續編	道光三十年六月日檢校提學金學性內賜列聖誌狀一件命除謝恩檢校待教臣李(手)	奎章之寶
兩陵誌狀續編	道光三十年六月日原任直提學趙秉駿內賜列聖誌狀一件命除謝恩檢校待教臣李(手)	奎章之寶
賡詩	咸豐四年六月日判府事金興根內賜賡進詩一件命除謝恩檢校待教臣洪(手)	奎章之寶
陸奏約選	咸豐九年正月日人日製賦次上幼學□□□內賜陸奏約選一件命除謝恩檢校待教臣李(手)	奎章之寶
國語	咸豐九年七月日曾經文任李鍾愚內賜國語一件命除謝恩檢校待教臣李(手)	奎章之寶
奎章全韻	同治三年八月日秋到記賦次上生員成大永內賜奎章全韻一件命除謝恩直閣臣李(手)	奎章之寶
三陵誌狀續編	同治四年七月日原任直閣□□□內賜三陵誌狀一件命除謝恩直閣臣李(手)	奎章之寶
睿陵誌狀	同治四年七月日提學金學性內賜睿陵誌狀一件命除謝恩直閣臣李(手)	奎章之寶
三班禮式	同治五年八月日內賜行副雙軍洪鏡周三班禮式一件命除謝恩同副承旨臣金(手) 爽鎮	宣賜之記
六典條例	同治六年五月十八日內賜進講官申應朝六典條例一件命除謝恩右副承旨臣趙(手)	宣賜之記
三班禮式	同治七年七月日內賜三班禮式一件股栗縣監洪淳迥命除謝恩左副承旨臣洪(手)	宣賜之記
兩銓便攷	同治九年十一月日內賜兩銓便攷一件檢校副提學□□□命除謝恩右副承旨臣李(手)	宣賜之記

春秋左氏傳	同治十一年二月日文廟釋奠親祭召對同爲入侍幼學尹相翊內賜春秋一件命除謝恩檢校直閣臣李(手)	奎章之寶
奎章全韻	光緒六年六月日七夕製賦次上進士宋淳鐸內賜奎章全韻一件命除謝恩直閣臣洪(手)	奎章之寶
諭大小…斥邪論音	光緒七年六月日蔚山府使朴齊萬內賜斥邪論音一件命除謝恩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大小…斥邪論音	光緒七年六月日原任提學金炳德內賜斥邪論音一件命除謝恩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大小…斥邪論音	光緒七年六月日江華留守李載元內賜斥邪論音一件命除謝恩直閣臣金(手)	奎章之寶
諭大小…斥邪論音	光緒七年十月日禁衛騎士將李斗鎔內賜斥邪論音一件命除謝恩待教臣閔(手)	奎章之寶
奎章閣志	光緒八年十月日直閣徐相祖內賜閣志一件命除謝恩檢校直閣臣李(手)	奎章之寶
奎章閣志	光緒十二年七月日直閣尹濂內賜奎章閣志一件命除謝恩檢校直閣臣金(手)	奎章之寶
奎章全韻	光緒二十年二月日日次儒生以製代講應製表次上幼學朴熙陽內賜奎章全韻一件命除謝恩直閣臣朴(手)	奎章之寶
皇明詔令	光武二年八月日特進官閔泳翊內賜皇明詔令一件命除謝恩秘書院卿臣李(手)	欽文之寶
塔源系譜紀略	光武五年六月日量地衙門副總裁高永喜內賜塔源譜略一帙命除謝恩秘書院丞臣李(手)	欽文之寶

內賜記와 內賜印이 갖추진 개인 내사본 100건 중 훼손 및 삭제되어 수사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적이 9건이다. 정확한 성명이 나타나는 91건의 내사본을 살펴보면 중친을 포함하여 정1품 영의정부터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유생에 이르기까지 수사자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영조 시기부터는 전직 관료에게, 정조 시기부터는 시험에 대한 포상 사례가 증가되었다.⁹⁾ 또한 중복자를 제외하면 총 65명의 명단이 확인되는데 이 중 2건 이상 하사받은 인물이 9명이다. 權濬가 10건으로 最多이며, 洪秀輔와 그의 아들 洪仁浩가 각각 5건, 閔應洙 4건, 金學性이 3건이고 金萬基, 李寅燁, 李樞, 洪準海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난다. 權濬와 洪秀輔, 洪仁浩, 閔應洙의 내사본은 구입본에서 나타나고, 金學性의 내사본은 본도서에서 나타나고 있다.¹⁰⁾ 기관의 일반적 수집 행태는 자료에 따른 개별 수집이 아닌 가문별, 인물별 일괄 수집의 경향이 강하므로 이렇듯 관련 자료가 集書되는 현상이 흔하다.

III. 時期 分析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후기를 구분할 때 조선전기의 내사본은 3건이고 조선후기의 내사본은 97건이다. 시기별 현황을 정리하면 중종 2건, 선조 1건, 인조 2건, 효종 2건, 현종 2건, 숙종 12건, 영조 28건, 정조 20건, 순조 1건, 헌종 6건, 철종 6건, 고종 18건이다. 最古本은 1534년(중종29) 吏曹判書 李思均의 『春秋左傳直解』이고, 最近本은 1901년(고종35) 量地衙門副總裁 高永喜의

9) 이러한 현상은 규장각 소장본 뿐만 아니라, 여러 타기관 의 소장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김학성의 내사본 3건은 규장각 각신으로 제직 중이던 시절에 하사 받은 『列聖誌狀』의 단행본들이다. 집무실에 비치되었다가 궁실 구장본에 포함된 듯하다.

『璿源系譜記略』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별 왕조로는 영조 시기의 내사본이 가장 많고, 숙종에서 정조로 이어지는 100여년 간의 내사본이 60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큰 전쟁과 변란이 없는 안정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영·정조시기에 발달한 문치와 문흥의 통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시기의 어제서와 정조시기 율음서는 종류뿐만 아니라 인쇄 부수도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 시기 내사본의 절대 수량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 시기별 內賜本 소장 현황

시기	왕조	수량(건)	비율(%)
壬亂以前	중종	2	2
	선조	1	1
壬亂以後	인조	2	2
	효종	2	2
	현종	2	2
	숙종	12	12
	영조	28	28
	정조	20	20
	순조	1	1
	헌종	6	6
	철종	6	6
	고종	18	18

한편, 내사인은 내사본의 증거적 印記로써 조선 전기부터 정조 초기까지 「宣賜之記」가 유일하였다. 광해군시기 일부의 내사본에 「承政院印」이 사용되었고, 영조시기 3차례 印頒된 『大訓』에는 「諭書之寶」¹¹⁾가 쓰이기도 했지만 조선 개국 후 400년 동안의 공식 내사인은 「宣賜之記」였다. 그러나 정조 즉위와 함께 이러한 규칙에 변화가 생기고, 내사인의 용도로 「同文之寶」가 새롭게 등장한다. 사용 시기는 「宣賜之記」와 혼용되는 정조 즉위 후 5년에 한하며, 전하는 인본이 매우 적다. 先學의 연구에 따르면 규장각 각신이나 초계문신 등 측근에 대한 우대 사례로 보고 있다.¹²⁾ 규장각의 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던 1781년(정조5)부터는 「奎章之寶」가 새로운 내사인으로 등장하여¹³⁾

- 11) 「諭書之寶」는 관찰사·방어사에게 내린 諭書에 사용하던 어보이다. 문서가 아닌 서적에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諭書之寶」를 내사인으로 사용한 사례는 『大訓』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2) 「同文之寶」의 安印本은 『三經四書正文(1775)』, 『明義錄(1778)』, 『續明義錄(1778)』, 『續明義錄諺解(1778)』, 『內閣古事節目(1781)』, 『文臣講製節目(1781)』, 『親臨摛文院講義(1781)』 정도이다.
- 13) 내사인 「奎章之寶」가 처음으로 安印된 서적은 1781년(정조5)에 간행된 丁酉字本 『唐宋八子百選』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 후기 100여년 간 지속되었다.¹⁴⁾ 이 기간 중 「宣賜之記」가 안인된 사례는 총 10차례 안팎에 불과하며 사례로는 『程書分類(1783)』¹⁵⁾, 『兩銓便攷(1865)』, 『三班禮式(1866)』, 『六典條例(1867)』, 『三班禮式(1868, 修正增補)』 『兩銓便攷(1870, 再頒)』, 『弘文館志(1871)』 등이다.¹⁶⁾ 「奎章之寶」 다음으로는 내사인 「欽文之寶」가 나타나는데 『離院條例(1891)』¹⁷⁾, 『皇明詔令(1898)』, 『璿源系譜紀略(1901)』에 사용되었다. 규장각 소장본 100건에 대한 내사인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시기별 內賜印 분포 현황

내사인	시기	수량(건)	비율(%)
宣賜之記	1534~1778, 1866~1868, 1870	52	52
諭書之寶	1741, 1755, 1769	3	3
同文之寶	1778, 1781	3	3
奎章之寶	1782~1894	40	40
欽文之寶	1898, 1901	2	2

이처럼 「宣賜之記」의 사용은 전 시기 동안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조 재위 시기부터 사용한 「奎章之寶」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내사인 사용 시기

14) 「奎章之寶」는 1781년(정조6)부터 1894년(광서20)까지 113년간 사용되었다. 1894년 2월 이후로는 「奎章之寶」가 안인된 서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15) 장서각 소장본임
 16) 이 시기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왕권 강화에 힘쓰던 시기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처럼 규장각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서 반사의 기능도 함께 위축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7) 괄호안의 연도는 내사 연도 기준임

IV. 板種 分析

조선시대의 관찬서는 건국 초기부터 주자소·전교서·교서관에서 금속활자나 목판으로 인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금속활자 인쇄 기술이 발달한 조선은 각 시기별로 끊임없이 관주활자를 주조했고 이를 서적의 인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다량의 서적을 일시에 간행할 때는 목판 인쇄를 중용하였고 私家本, 寺刹本도 대부분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또한 서적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목활자 및 탁본 인쇄 방식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행되었다. 규장각의 내사본은 관주활자 인쇄본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목판과 목활자, 탁본의 순서로 나타난다. 규장각의 소장 개인 내사본의 판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판종별 현황

구분	금속활자본	목판본	기타(목활자본/탁본)	합계
수량(건)	61	32	7	100
비율(%)	61	32	7	100

1.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로 간행된 서적은 모두 61건이다. 갑인자본부터 갑진자본, 무신자본, 현종실록자본, 원종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 정리자본, 전사자본, 재주정리자본까지 10종의 금속활자본이 나타나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 금속활자본은 2건으로 1534년(중종29)의 갑진자본¹⁸⁾ 『春秋左傳直解』와 1543년(중종38)의 갑인자본 『大典後續錄』이다. 이 두 종은 현전본이 드문 가운데 내사본으로는 더욱 희귀하다. 특히 『春秋左傳直解』는 유일한 현전 내사본으로 판단된다. 『大典後續錄』은 규장각본 외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본¹⁹⁾ 정도가 더 확인되고 있다. 위 2종은 현전 내사본으로는 매우 앞선 시기에 해당된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후기 금속활자본은 59건이다. 이 중 무신자본은 『故事撮要(1675)』, 『貞觀政要(1676)』, 『醫林撮要(1676)』, 『排字禮部韻略(1678)』, 『春秋補編(1701)』, 『近思錄(1708)』, 『近思錄釋疑(1708)』, 『肅廟寶鑑(1730)』, 『小學諸家集註(1736)』, 『女四書(1737)』, 『內訓(1737)』, 『抑箴(1763)』, 『自醒錄(1763)』, 『繼述受宴錄(1766)』, 『永世追慕錄(1770)』, 『耆科賡載錄(1772)』, 『永垂百世錄(1772)』, 『追慕垂戒錄(1772)』 등 동일본 포함 20건이다. 숙종 시기부터 영조 시기까지 100여 년 간 꾸준히 印頒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서문은 갑인자

19) 內賜記: 嘉靖二十二年十一月日內賜慶尙道觀察使李彥迪後續錄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李(手)/宣賜之記

현종실록자본은 『列聖御製(1814)』, 『元陵誌狀續編(1837)』, 『兩陵誌狀續編(1850)』, 『三陵誌狀續編(1865)』, 『睿陵誌狀(1865)』 등 동일본 포함 8건이다. 현종실록자 초기본은 나타나지 않고,²⁰⁾ 19세기 경 誌狀類를 중심으로 여러 종의 현종실록자보주본이 나타나고 있다.

원종자본은 1건으로 『孟子諺解(1693)』가 유일하다.²¹⁾

임진자본은 『明義錄(1777)』, 『속명의록언해(1778)』,²²⁾ 『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1881)』 등 동일본 포함 6건이다. 임진자는 1772년(영조48)에 주조된 후 1776년(영조52) 영조의 昇遐 전까지 저술된 영조어제서와²³⁾ 18~19세기의 각종 관찬서를 인쇄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정유자본은 『文臣講製節目(1781)』, 『諭入庭宗親文武百官論音(1782)』, 『諭中外大小臣庶論音(1783)』,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論音(1783)』, 『字恤典則(1783)』, 『弘文館志(1784)』, 『諭大小臣僚論音(1784)』, 『表忠論音(1788)』,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1839)』, 『陸奏約選(1859)』, 『春秋左氏傳(1872)』, 『奎章閣志(1882)』, 『奎章閣志(1886)』 등 동일본 포함 18건이다. 이 중 『奎章閣志』, 『陸奏約選』, 『春秋左氏傳』은 각각 1784년(정조8), 1794년(정조18), 1797년(정조21)에 간행된 초간본이다. 궁중에 보관 중이던 서적을 고종시기 왕의 親試 후 포상한 것으로 간행 시기와 내사 시기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정조시기에 간행된 서적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²⁴⁾

정리자본은 『太學恩杯詩集(1799)』과 『廣詩(1854)』 2건이다. 정리자는 1796년(정조20)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1857년(철종8) 주자소의 화재로 소실되고 1858년(철종9)에 다시 주조되었다. 약 60여년 간 사용되었으며 정리자본은 30여 종 이상이 현전하고 있다.

전사자본은 『六典條例(1867)』와 『兩銓便攷(1870)』 2건이다. 전사자는 1816년(순조16)에 주조된 후 일제 시기까지 약 100여년 간 사용되었으며, 전사자본은 문집류를 중심으로 200여 종 이상이 현전하고 있다.

제주정리자본은 『國語(1859)』와 『皇明詔令(1898)』 2건이다. 제주정리자는 1857년(철종8) 정리가가 소실되고 이듬해 1858년(철종9)에 다시 주조된 활자다. 조선말기 각국과의 조약서, 관보, 교과

20) 비교적 주조 초기의 현종실록자 내사본은 『東文選(1713)』, 『列聖誌狀通紀(1719)』, 『勘亂錄(1729)』이 있다.

21) 원종자본은 1693년(숙종19)에 간행한 14권 7책의 『孟子諺解』와 2권 2책의 『孟子大文』 2종만 알려져 있다. 跋文은 숙종의 친필을 字本으로 삼아 만든 숙종자(大字)로 인쇄하였다.

22) 『속명의록언해』는 임진자병용한글자로 구분해야 하지만 분류의 편의상 임진자에 편입하였다.

23) 영조어제 중 임진자본은 『御製自醒翁自叙(1773)』, 『御製八旬書示後昆錄(1773)』, 『御製八旬裕後錄(1773)』, 『御製續陟帖三章加三章(1773)』, 『御製八旬裕昆錄(1775)』, 『御製祖孫同講大學文(1775)』, 『御製誦夙夜箴勗勉冲子兼示平生予意(1776)』, 『御製八旬向九翁靜臥慷慨書示孝孫(1776)』, 『御製八旬興懷千萬書示冲子(1776)』, 『御製誦孔訓勉今世(1776)』 등이 있다.

24) 간행과 동시에 배포되는 기존의 관행과 달리 이들 서적은 간행 시기가 많이 지난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초간본에 대한 복각본의 반사도 활발하였다. 사례로는 『唐宋八子百選(1781)』, 『文臣講製節目(1781)』, 『奎章閣志(1784)』, 『弘文館志(1784)』, 『宮園儀(1780, 1785)』, 『朱書百選(1794)』, 『史記英選(1796)』, 『陸奏約選(1796)』, 『奎章全韻(1797)』, 『春秋左氏傳(1797)』, 『杜律分韻(1798)』, 『陸律分韻(1798)』, 『杜陸千選(1799)』, 『雅頌(1799)』 등이다.

서 등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다.

〈표 5〉 금속활자본 세부 현황

활자명	서명	수량(건)	비율(%)
갑인자	大典後續錄(1543)	1	2
갑진자	春秋左傳直解(1534)	1	2
무신자	故事撮要(1675)/貞觀政要, 醫林撮要(1676)/排字禮部韻略(1678)/春秋補編(1701)/近思錄, 近思錄釋疑(1708)/肅廟寶鑑(1730)/小學諸家集註(1736)/女四書:2, 內訓(1737)/抑箴, 自醒錄(1763)/繼述受宴錄(1766)/追慕錄(1770)/耆科廣載錄:2, 永垂百世錄, 追慕垂戒錄(1772)	20	33
현종실록자	列聖御製(1814)/元陵誌狀續編:2(1837)/兩陵誌狀續編:3(1850)/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1865)/	8	13
원종자	孟子諺解(1693)	1	2
임진자	明義錄(1777)/속명의록언해(1778)/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4(1881)	6	10
정유자	文臣講製節目(1781)/諭入庭宗親文武百官論音(1782)/諭中外大小臣庶論音:3,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論音, 字恤典則(1783)/弘文館志, 諭大小臣僚論音(1784)/表忠論音(1788)/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4(1839)/陸奏約選(1859)/春秋左氏傳(1872)/奎章閣志(1882)/奎章閣志(1886)	18	30
정리자	太學恩杯詩集(1799)/廣詩(1854)	2	3
전사자	六典條例(1867)/兩銓便攷(1870)	2	3
제주정리자	國語(1859)/皇明詔令(1898)	2	3

위의 금속활자본 현황을 정리하면 갑진자본 1건, 갑인자본 1건, 무신자본 20건, 현종실록자본 8건, 원종자본 1건, 임진자본 6건, 정유자본 18건, 정리자본 2건, 전사자본 2건, 제주정리자본 2건으로 무신자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목판본

목판본은 모두 32건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본이 1건이고, 조선후기본이 31건이다. 이 중覆刻本은 임진자본각본 『明義錄』, 『明義錄諺解』와 정유자본각본 『國朝寶鑑』, 『字恤典則』 등 4건이다.

조선전기본으로는 1581년(선조14) 『農事直說』 1건이 있다. 내사본 『農事直說』은 규장각 소장본 외 고려대학교 소장본²⁵⁾과 일본 천리대도서관 소장본²⁶⁾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세 차례 중간된

25) 內賜記: 萬曆九年十二月日內賜公州牧使權文海農事直說一件命除謝恩右副承旨臣盧(手)/宣賜之記

26) 천리대도서관 소장본은 내사기 없이 내사인만 安印되어 있다.

『大訓』과 1797년(정조21) 초간 후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히 廣印되었던 『奎章全韻』의 짚은 내사가 특징적이다.

<표 6> 목판본 현황

왕조	서명	수량(건)	비율(%)
선조	農事直說(1581)	1	3
효종	四聲通解(1656)/龍飛御天歌(1659)	2	6
현종	孝經大義, 孝經諺解(1666)	2	6
숙종	列聖御製補遺(1680)/中庸諺解(1684)/周易本義啓蒙翼傳(1687)/沙溪先生遺稿(1695)	4	10
영조	大訓(1741) ²⁷⁾ /聖學十圖, 古鏡重磨方(1744)/續大典(1746)/大訓(1755)/宗簿侍揭板(1759)/揄揚盛烈錄(1763)/讀書錄(1767)/大訓(1769)/勤政訓諭, 續光國志慶錄, 樹德全編(1771)/英祖御筆(1776)	13	42
정조	明義錄-壬辰字覆刻, 續明義錄-壬辰字覆刻(1778)/國朝寶鑑-丁酉字覆刻(1782)/字彙典則-丁酉字覆刻(1783)	4	13
고종	奎章全韻 ²⁸⁾ (1864)/三班禮式(1866)/三班禮式(1868)/奎章全韻(1880)/奎章全韻(1894)/塔源系譜記略(1901)	6	19

3. 기타 판종

목활자본은 5건으로 광해군 시기의 훈련도감자본 2건과 정조 시기의 생생자본 3건이다. 『賡載軸』 3건은 대표 서명 기술한 것이고 순서대로 각각 9종, 4종, 2종의 『賡載軸』이 합본되어 있다.²⁹⁾ 탁본은 2건으로 영조의 친필을 탁본하여 書帖으로 제작하였다.

- 27) 『大訓』은 3차례에 걸쳐 반포되었다. 1741년(영조17)에 初刊되었고, 1755년(영조31)의 '乙亥補刊板'과 1769년(영조45)의 '己丑改刊板'으로 重刊되었다. 初刊本은 御製大訓, 御製告廟文, 御製頒教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重刊本 2종은 내용의 차이 없이 御製大訓, 御製告廟文, 御製頒教文, 繪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重刊本 2종에 繪音이 수록된 것 외에 御製頒教文의 내용도 初刊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28) 1796년(정조20)에 大本과 小本 등 2종으로 初刊되었다. 初學者들의 기본서로 수요가 많아 重刊本 등 이본이 다양하다. 조선시대본으로는 戊子本(1828), 乙未本(1835), 戊戌本(1838), 丙午本(1846), 辛亥本(1851), 庚申本(1860), 乙酉本(1885), 丁亥本(1887), 戊子本(1888), 戊戌本(1898), 乙丑本(1889) 등이 있으며 大正2年本(1913), 大正3年本(1914), 大正6年本(1917: 3종/翰南書林, 弘壽堂, 博文書館), 大正7年本(1918), 大正11年本(1922) 등 일제치하에서도 꾸준히 간행되었다. 고종시기 親試 후 포상으로 내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소장본은 각각 1864년(고종1), 1880년(고종17), 1894년(고종31)의 포상본이다.
- 29) 『內苑賞花戊申賡載軸』과 합본된 8종은 『內苑賞花壬子聯韻軸』, 『內苑賞花癸丑賡齋軸』, 『內苑賞花甲寅賡載軸』, 『內苑賞花乙卯賡載軸』, 『洗心臺辛亥賡載軸』, 『洗心臺壬子賡載軸』, 『洗心臺甲寅賡載軸』, 『洗心臺乙卯賡載軸』이고, 『華城奉壽堂進撰賡載軸』과 합본된 3종은 『華城將臺閱武賡載軸』, 『華城洛南軒養老賡載軸』, 『慈宮周甲誕辰賡載軸』이며, 『耆社賡載軸』과 합본된 1종은 『人瑞錄獻御日聯韻軸』이다.

〈표 7〉 기타 판종 현황

왕조	시기	서명	판종
인조	1623	山谷詩集註	訓練都監字
	1623	續武定寶鑑	訓練都監字
영조	1755	御製御筆	拓本(陰刻/帖)
	1759	敦寧府揭板	拓本(陽刻/帖)
정조	1795	賡載軸(9종)	生生字
	1795	賡載軸(4종)	生生字
	1795	賡載軸(2종)	生生字

V. 主題 分析

규장각 개인 내사본의 주제를 자체 적용한 사분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경부 13건, 사부 53건, 자부 17건, 집부 17건으로 규장각 고전적의 전래 과정에 부합되는 사부류의 서적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8〉 주제별 內賜本 현황

구분	경부	사부	자부	집부	합계
수량(건)	13	53	17	17	100
비율(%)	13	53	17	17	100

이들을 類別로 주제를 세분하면 經部는 易類,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小學類의 5주제, 史部는 編年類, 雜史類, 別史類, 詔令·奏議類, 政法類, 傳記類, 系譜類, 職官類의 8주제, 子部는 儒家類, 農家類, 醫家類, 藝術類, 類書類의 5주제, 集部는 總集類, 別集類, 詞曲類의 3주제에 해당하는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1. 經部

고대 중국의 사상 및 교육의 기초가 되는 유교의 경전 및 주석서, 언해서가 중심이다.

易類는 『周易』의 해설서 『周易本義啓蒙翼傳』 1건, 春秋類는 『春秋』의 해설서 『春秋左傳直解』, 『春秋補編』, 『春秋左氏傳』 등 3건, 孝經類는 『孝經』의 해설서 『孝經大義』와 언해본 『孝經諺解』 등 2건, 四書類는 『中庸』의 언해본 『中庸諺解』와 『孟子』의 언해본 『孟子諺解』 등 2건, 小學類는 한자 운서 『四聲通解』, 『排字禮部韻略』, 『奎章全韻』 등 5건이다.

經部の 13건은 初學者의 학습서인 소학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춘추류, 효경류·사서류, 역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경부 현황

분류	서명	수량(건)	비율(%)
역류	周易本義啓蒙翼傳	1	8
춘추류	春秋左傳直解/春秋補編/春秋左氏傳	3	23
효경류	孝經大義/孝經諺解	2	15
사서류	中庸諺解/孟子諺解	2	15
소학류	四聲通解/排字禮部韻略/奎章全韻:3	5	38

2. 史部

역사와 지리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법률에 관한 문헌이 중심이다. 編年類는 역대 국왕의 선정 사실을 실록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國朝寶鑑』 완질과³⁰⁾ 그 중 숙종의 선정 사실을 정리한 단행본 『肅廟寶鑑』 등 2건이다. 雜史類는 당 태종과 신하들의 정치 문답을 엮은 『貞觀政要』, 鄭厚謙과 洪麟漢의 賜死 과정을 기록하고 정당성을 밝힌 『明義錄』, 洪相範의 역모 사건을 기록하고 정당성을 밝힌 『續明義錄』과 언해본 『續明義錄諺解』 등 5건이다. 別史類는 춘추시대 8개국의 別史를 기록한 『國語』 1건이다. 詔令·奏議類 중 詔令類는 당쟁의 엄금을 공포한 『大訓』, 영조가 70세 되던 해에 제신들이 모여 화창한 시를 엮은 『抑箴』, 붕당심의 해체를 강조한 『勤政訓諭』, 선왕 영조의 덕을 본받도록 권고한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 강원도에 흉년이 들자 이에 대한 구휼법을 정리한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흉년에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휼법을 정리한 『字恤典則』, 宋德相³¹⁾ 사건의 전말을 밝혀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편찬한 『諭中外大小臣庶綸音』, 책봉을 앞두고 元子(眞宗)의 보필을 당부한 『諭大小臣僚綸音』, ‘李麟佐의 亂’의 甲年을 맞아 당시 공신 및 자손들을 치하한 『表忠綸音』, 1839년(헌종5)에 반포한 천주교 배척의 훈유문인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1881년(고종18)에 반포한 천주교 배척의 훈유문인 『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명 태조부터 세종까지의 각종 詔令文을 모아 편집한 『皇明詔令』 등 23건이다. 奏議類는 문신들에게 탕평 찬양글을 짓도록 하고 이를 모아 엮은 『永垂百世錄』, 奏議文 작성 시 활용하기 위해 陸贄의 奏議文 29편을 선발하여 엮은 『陸奏約選』 등 2건이다. 따라서 詔令·奏議類는 모두 25건이다. 政法類는 국가통치와 국정운영에 관련된 통제, 전례, 재정, 군사, 외교, 교육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데, 소장본은 통제와 전례에 관계된 항목이 중심을

30) 1782년(정조6)의 간행본으로 영조 代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1) 洪國榮의 측근으로 한 때 세력을 떨쳤으나, 흥국영이 왕비 독살을 계획하다가 역모 혐의로 죽자, 宋德相도 그의 일파로 몰려 三水府로 귀양을 간 후 1년 만에 병사하였다.

이루고 있다. 통제에는 조선 전기의 법전 『大典後續錄』, 영조 시기의 법전 『續大典』, 고종 시기 육조의 행정 법전 『六典條例』 등 3건이다. 전례는 연례의 절차를 규정화한 『繼述受宴錄』, 抄啓文臣 교육 규정을 정리한 『文臣講製節目』, 문관·무관·음관의 행동 규정을 정리한 『三班禮式』, 조선전기 전란과 분쟁 기록을 정리한 『續武定寶鑑』 등 5건이다. 따라서 政法類는 모두 8건이다. 傳記類는 영조와 貞聖王后, 貞純王后의 誌狀을 엮은 『元陵誌狀續編』, 순조·익종의 誌狀을 엮은 『兩陵誌狀續編』, 순조·익종·헌종의 誌狀을 엮은 『三陵誌狀續編』, 철종의 誌狀을 엮은 『睿陵誌狀』 등 7건이다. 系譜類는 왕실족보인 『璿源系譜記略』 1건이다. 職官類는 조선시대 관청의 내력(연혁,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홍문관의 건치·연혁을 정리한 『弘文館志』, 규장각의 건치·연혁을 정리한 『奎章閣志』, 이조와 병조의 인사 법규 및 관례를 정리한 『兩銓便攷』 등 4건이다.

史部의 53건 중 약 48%에 달하는 25건이 왕의 훈유문이다. 이는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10〉 사부 현황

분류	서명	수량(건)	비율(%)
편년류	國朝寶鑑/肅廟寶鑑	2	4
잡사류	貞觀政要/明義錄:2/續明義錄/續明義錄診解	5	9
별사류	國語	1	2
조령·주의류	조령 大訓:3/抑箴/勤政訓諭/諭入庭宗親文武百官 綸音/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字恤 典則:2/諭中外大小臣庶綸音:3/諭大小臣僚 綸音/表忠綸音/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 音:4/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4/ 皇明詔令	23	43
	주의 永垂百世錄/陸奏約選	2	4
정법류	통제 大典後續錄/續大典/六典條例	3	6
	전례 繼述受宴錄/文臣講製節目/三班禮式:3/續武 定寶鑑	6	11
전기류	元陵誌狀續編:2/兩陵誌狀續編:3/三陵誌狀 續編/睿陵誌狀	7	13
계보류	璿源系譜記略	1	2
직관류	弘文館志/兩銓便攷/奎章閣志:2	4	7

3. 子部

제자백가의 각종 저작이 중심이다. 儒家類는 유교 경전의 연구서로 성리학의 입문서인 『近思錄』과 그의 해설서인 『近思錄釋義』, 여성용 수신서인 『女四書』와 『內訓』, 『小學』의 주석서인 『小學諸家集註』, 성리학의 핵심을 10개의 그림으로 설명한 『聖學十圖』, 옛 箴과 銘 중 수양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을 뽑아 엮은 『古鏡重磨方』, 영조의 유교 경전 학습 내용을 기록한 『讀書錄』, 영조가

경전을 인용하여 덕행에 힘쓸 것을 강조한 『樹德全編』 등 10건이다. 農家類는 농작물의 종류, 재배법, 농기구에 관한 것으로 종합 농업 기술서인 『農事直設』 1건이다. 醫家類는 역대 의학자들의 전기와 질병의 증상, 인용 서목 등을 망라한 종합 의학서 『醫林撮要』 1건이다. 藝術類는 서화, 서예, 회화, 전각에 관련된 서적으로 영조가 수찬관에게 내린 격려사 글귀를 음각 탁본한 『御製御筆』, 영조의 친필로 돈녕부의 계판을 만들어 양각 탁본한 『敦寧府揭板』, 영조의 친필로 중부시에 관한 글을 써 관각한 『宗簿侍揭板』, 영조가 ‘瑞雪驗豊 明農登熟 仍此有祝 近入親書’ 등의 글을 써 관각한 『英祖御筆』 등 4건이다. 諭書類는 백과사전식 참고서로 事大交隣의 내용을 포함, 일상생활의 제반 문제를 정리한 『故事撮要』 1건이다.

子部の 17건 중 약 60% 정도인 10건이 儒家類로 국가의 통치 이념인 유학 및 경전의 연구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자부 현황

분류	서명	수량(건)	비율(%)
유가류	近思錄/近思錄釋疑/女四書:2/小學諸家集註/內訓/聖學十圖/古鏡重磨方/讀書錄/樹德全編	10	59
농가류	農事直說	1	6
의가류	醫林撮要	1	6
예술류	御製御筆/敦寧府揭板/宗簿侍揭板/英祖御筆	4	24
유서류	故事撮要	1	6

4. 集部

왕과 당대의 문신 및 학자들의 시문을 비롯하여 희곡, 소설 등이 중심이다. 總集類는 2인 이상의 시문집을 모은 것으로 역대 왕의 어제를 모은 『列聖御製』, 宗系辨誣³²⁾를 해결한 후 왕과 신하의 기념시를 엮은 『續光國志慶錄』, 영조가 자신의 세자 책봉 60주년을 기념하여 耆老科를 실시하고 왕과 신하의 기념시를 엮은 『耆科廣載錄』, 영조가 자신의 세자 책봉 60주년을 기념하여 진찬을 받고 왕과 왕세손, 신하들의 기념시를 수록한 『追慕垂戒錄』, 각종 행사 후 기념시를 수록한 여러 종의 『廣載軸』³³⁾, 성균관 太學生과 抄啓文臣들의 시를 모은 『太學恩杯詩集』, 역대 왕의 어제를 모은 『列聖御製』³⁴⁾, 순조의 비 純元王后的 66세 생일을 맞아 철종과 신하들의 기념시를 모은 『廣

32) 宗系辨誣 사건이 일단락되고 『光國志慶錄』을 편찬하여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였으나, 1771년에 朱璘의 『通紀輯略』에 번무 이전의 잘못된 중계가 실려 간행되자 다시 해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간행하였다.
 33) 정조시기 매년 봄, 신하들과 함께 內苑에서 꽃구경을 하며 지은 시와 洗心臺에 행차하여 풍광을 즐기며 지은 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화성행궁의 奉壽堂에서 진찬연을 행하며 지은 시, 봉수당 뒷산 華城將臺에서 군대를 사열하며 지은 시, 화성의 洛南軒에서 양로연을 베풀며 지은 시 등이 실려 있다.
 34) 기존의 『列聖御製』에 정조의 어제를 포함시켜 1814년(순조14)에 편찬하였다.

詩』까지 11건이다.³⁵⁾ 別集類는 개인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왕의 시문을 모아놓은 御製와 개인의 시문을 모아놓은 一般으로 나뉜다. 이 중 別集類-御製는 70세의 영조가 父兄에 孝悌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추모의 정을 서술한 『自醒錄』, 先代의 왕과 비빈들을 顯彰한 『揄揚盛烈錄』, 77세의 영조가 『小學』을 강론하면서 부모와 형제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정리한 『永世追慕錄』 등 3건이고, 別集類-一般은 宋 黃庭堅의 시에 주석을 붙인 『山谷詩集註』와 金長生의 문집인 『沙溪先生遺稿』 2건이다. 詞曲類는 詞曲, 樂府, 歌詞, 民謠 등이 중심이다.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가사로 공포한 『龍飛御天歌』 1건이다.

集部の 16건 중 60%이상인 10건이 總集類이며 각종 『廣載軸』이 대표적이다. 왕과 제신들의 시를 모아 행사를 기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집부 현황

분류	서명	수량(건)	비율(%)	
총집류	列聖御製補遺/續光國志慶錄/耆科廣載錄:2/追慕垂戒錄/內苑賞花戊申廣載軸等/華城奉壽堂進饌廣載軸等/耆社廣載軸等/太學恩杯詩集/列聖御製/廣詩	11	63	
별집류	어제	自醒錄/揄揚盛烈錄/永世追慕錄	3	19
	일반	山谷詩集註/沙溪先生遺稿	2	13
사곡류	龍飛御天歌	1	6	

VI. 結 論

규장각 장서의 특징은 사고본과 구장본을 포함한 제실도서를 중심으로 수집본과 기증본이 합쳐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과 민란 등으로 사고와 궁실 전각의 소장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사라진 가운데, 사고·관청·개인에게 하사된 규장각의 내사본 전존 현황은 대부분 17세기 이상을 크게 넘지 못한다. 이 가운데 개인에게 하사된 서적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 내사본은 모두 1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最古本은 1534년(중종29) 吏曹判書 李思均의 『春秋左傳直解』이고, 最近本은 1901년(고종35) 量地衙門副摠裁 高永禧의 『璿源系譜記略』이다.

둘째, 시기별 분포 현황은 중종 2건, 선조 1건, 인조 2건, 효종 2건, 현종 2건, 숙종 12건, 영조 28건,

35) 총집류는 『列聖御製』를 제외하면 모두 왕이 읊은 시에 왕세자와 신하들의 화답시를 엮은 서적이다. 총집류에 해당되는 기준이 2인 이상의 글을 합한 것이지만, 『廣載錄』은 최소 수 명에서 최대 100여명 이상의 시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조 20건, 순조 1건, 헌종 6건, 철종 6건, 고종 18건으로 영조 시기의 내사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7세기 말 숙종시기부터 18세기 말 정조시기까지 약 100여 년간의 내사본이 60건으로 전체 내사본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관종별 분포 현황은 금속활자본 61건, 목판본 32건, 목활자본 5건, 탁본 2건으로 금속활자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속활자본 중에서도 무신자본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정유자본이 18건으로 두 종 활자본이 전체 금속활자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주제별 분포 현황은 경부 13건, 사부 53건, 자부 17건, 집부 17건으로 국가 통치 및 역사를 기술한 史部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史部 중에서도 왕의 훈유문을 모은 조령주의류가 가장 많고, 정법류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법률과 의례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규장각 소장 개인 내사본의 분석한 종합적 특징은 영·정조시기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史部의 서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18세기 무신자와 정유자로 인쇄한 훈유문, 법률, 의례서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纂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0.
- 김남기. “조선시대 君臣의 唱和와 그 의미 : 규장각 소장 廣載軸과 聯韻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8집(2006. 12), pp.141-176.
- 김문식 등.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서울 : 태학사, 2007.
-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제6권, 제8호(1969. 10), pp.8-19.
-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조, 그 시대와 문화.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2.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서울대학교도서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 : 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 신승운. “奎章全韻을 통해서 본 朝鮮朝의 書籍 頒賜와 그 規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293-316.
- 沈喁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 서울 : 一志社, 1990.
-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제8집(2002. 12), pp.5-30.

- 尹炳泰. “內賜記와 內賜印記.” 문헌정보학연구지, 제8호(1983. 2), pp.25-43.
- 尹炳泰. “內賜記 이야기.” 古書, 제4호(1997. 4), pp.7-20.
- 李殷澤. “菱花板製作 및 內賜記研究.” 도서관학논집, 제2권(1975. 12), pp.79-97.
- 李在俊. 藏書閣 所藏 內賜本 研究.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
- 이재준·송일기. “藏書閣 所藏 內賜本の 書誌的 研究.” 書誌學報, 제33호(2009. 6), pp.153-184.
- 이재준·송일기. “朝鮮時代 內賜本の 內賜記 記述 形式考.”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pp.85-118.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 민음사, 1997.
- 한영우.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 서울 : 지식산업사, 2008.

